주요 국가별 연금개혁 현황

2024. 4월

목 차

Ⅰ. 연구배경 1

Ⅱ. 국별 연금개혁 내용 2

ⅰ. 일 본 2

ⅱ. 스웨덴 3

ⅲ. 독 일 4

ⅳ. 호 주 5

Ⅲ. 시사점 6

FKI 한국경제인협회

Ⅰ. 연구배경

▣ 연구배경 및 목적

○ ’18년,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며 현재까지 **저출생·고령화 문제**가 심각히 대두됨에 따라 **연금재정**은 **기존 예측 대비 악화**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

* ’23년 합계 출산율(여성 가임기간 15세~49세 내 평균 출생아 수)은 0.72명으로 세계 최하위 ’17년 이후 6년 연속 최저치 경신 중

< 주요국 합계 출산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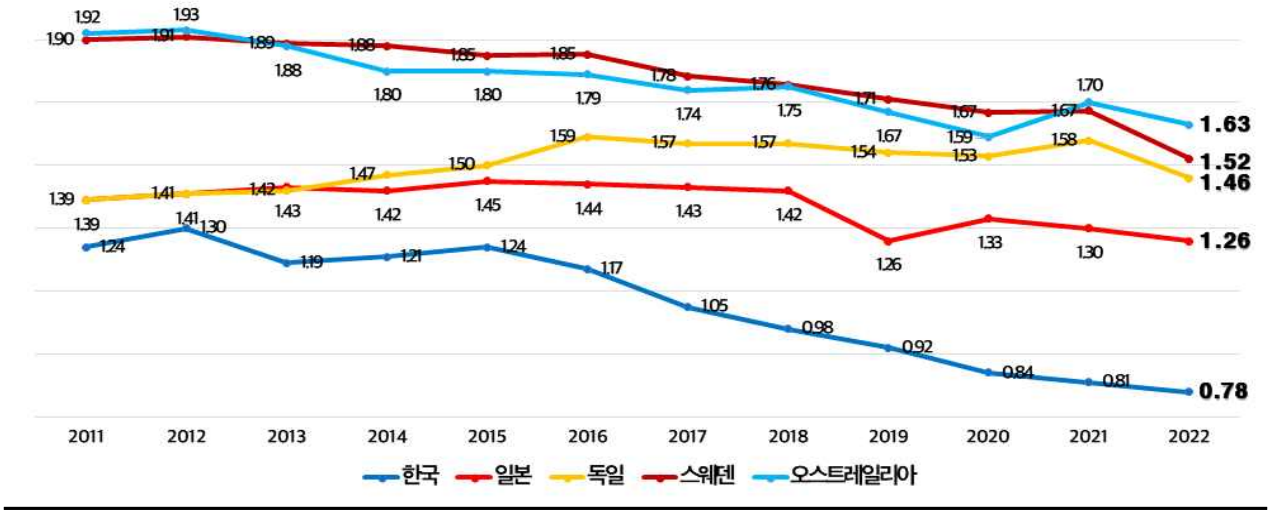

* 아울러 ’20년 만 64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5.7%를 기록하였으며, ’25년 초고령사회(고령인구 20%) 진입 예상

* ’70~’18년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.3%로 일본(2.9%)보다 속도가 빠르며,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상태

○ 아울러 국민연금 **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**가 점차 많아지는 등 **국민연금 재정**의 **고갈 우려가 증대**되고 있음

< 국민연금 가입자·수급자 추이 >

	’21년	’22년	’23년
수급자 수(만명)	607	664	682
가입자 수(만명)	2,235	2,250	2,238
수급자/가입자 비율(%)	27.1	29.5	30.5

*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’54년경 국민연금 재정 고갈 예상

○ 이에 저출생·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 및 시행 중인 **해외 우수사례**를 **분석**하고 **주요 참고사항**을 **도출**하고자 함

* 현행 연금제도 지속 시 ‘연금재정 지속가능성’ 확보에 상당한 애로 존재

Ⅱ. 국별 연금개혁 내용

▣ 일 본

○ '90년 전후 저출생·고령화에 따라 연금재정 악화 → '98년~'12년까지 다섯 차례 연금개혁 단행

○ 해당 연금개혁 중 '04년 사례 주목 필요

–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·공적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억제하는 **자동조정장치 '거시경제 슬라이드***' 제도 도입

* 연금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일정 **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(이하 '조정률')** 결정, 연금 지급액 차감

▸ **신규 연금액**('04년 이후 수급자)
= 전년도 신규 연금액 × (실수령 명목임금 변동률 – 조정률)

▸ **계속 연금액**('04년 이전 수급자)
= 전년도 연금액 × (물가변동률 – 조정률)

▸ **조정률** = 최근 3년 평균 공적연금 전체 가입자 감소율 + 평균수명 연장을 감안한 일정비(0.3%)

* 자료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· **(임금·물가 상승률 > 조정률)** 거시경제 슬라이드 작동→임금·물가 상승률에서 조정률 100% 반영한 수치를 차감→연금액 조정(삭감)

· **(임금·물가 상승률 < 조정률)** 거시경제 슬라이드 작동→전년도 연금액 수준 유지 정도로만 적용

· **(임금·물가 하락 시)** 임금·물가 하락률만 반영(연금액 삭감), 슬라이드 작동 無

○ 이전 연금제도의 경우 임금 및 물가상승분을 매년 반영한 지급액 인상 구조였으나, **재원 범위 내 지급 구조**로 전환해 **지급액 인하 가능**

* ('04년 기준) 지급액 23.3만엔(약 226만원)→22.0만엔(약 212만원, △5.9%)

▣ 스웨덴

○ ’70년대 이후 경기침체 및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불안정성 가중으로 ’98년, 기대수명 연장·경제상황 반영 **자동조정장치 포함** 제도 개혁

– 기존 ‘기초연금(DB)’ 및 ‘소득비례연금’ 폐지→❶‘NDC 소득비례연금제’ 및 ❷‘적립식 수익연금 지급제(가입자가 선택한 기금에 투자)’, ❸‘최저보장연금(저소득·무소득자 대상) 제도’ 도입

〈 NDC(명목확정기여형) · DC(확정기여형) 비교표 〉

	NDC	DC
기여금 운용방식	가상 계좌·투자 없음	개인 계좌·직접 투자
급여 계산방식	예상 수명·연금 재정 상황 감안	개인 투자실적 누적 금액
투자 위험	정부 부담	개인 부담

※ 참고 : DB(확정급여)형의 경우 퇴직 이후 일정 연금액 확정(납부한 금액 대비 더 받는 구조)

○ NDC형은 기대수명 및 연금 재정상황 등에 따라 연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나, 일부 불안정 요소*로 자동조정장치인 **안정화지수** 추가 도입

* 인구 감소에 따른 납부액 감소 등으로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

▸ **연금액** = 적립금 ÷ 연금계수

※ 연금계수 = ∑(연간소득 ÷ 평가소득 × 보험료율)

· 연간소득 : 근로·사업·투자 등 한 해 동안의 총소득

· 평가소득 : 가구소득·재산·거주지·세율·혜택 등을 고려한 조정소득

· 보험료율 : NDC 소득비례연금제 16% (적립식 수익연금 지급제의 경우 2.5%)

▸ 안정화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연금액을 조정(삭감)할 수 있음(단, 안정화지수가 소득지수 수준과 같아질 때까지 조정 진행)

조정 연금액 = 기존 연금액 × {안정화지수 ÷ (소득지수 × 1.016)}

※ 안정화지수 = 소득지수 × 안정화비율

※ 안정화비율 = 연금자산 ÷ 연금부채

* 자료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국회입법조사처, Orange Report 2020

· **(안정화비율 > 1)** 연금자산이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부채 대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재정이 안정상태에 있음

· **(안정화비율 < 1)** 재정 불균형 상태(자산<부채) 의미, 자동조정장치 작동 → 연금액 안정화지수에 연동→ 자동적으로 연금액 조정(삭감)

▣ 독 일

○ ’01년 높은 실업률 등 경제여건 변화로 미래 연금재원 확보 한계 예상, ’04년 연금액을 **자동 조정할 수 있는 ‘지속가능성 계수*’** 도입

– 이전 연금개혁(’01년) 단행 후 3년만 단기 경제침체로 가입자 약 70만명 감소 → 기존 제도 운용을 위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상 발생

– ’04년 개혁 이후 연금제도 구조는 ‘①자동조정장치가 반영된 공적연금’과 ‘②사적 개인연금(리스터)’체계로 변화

*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(인구통계비)를 반영, 산출

○ 독일의 경우 ❶평균소득 변화, ❷보험료율 변화, ❸지속가능성 계수를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특징 존재

▸ **기준 연금액**(’04년 도입 당시)
= 전년도 기준 연금액 × 평균소득 변화 × 보험료율 변화 × 지속가능성 계수

▸ **지속가능성 계수**$_t$ = (1 – 제도부양비$_{t-1}$ ÷ 제도부양비$_{t-2}$) × α + 1

※ 제도부양비 = 수급자수 ÷ 가입자수

※ 결정계수(α) = 인구구조 변화를 급여에 반영하는 정도(정책적으로 0.25 적용 중)

* 자료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· **(예 : 제도부양비 10% 상승 시)** 결정계수(0.25) 비율 반영→최종 지속가능성 계수 0.975로 결정→타 요소 변화없다고 가정 시, 기준 연금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0.975 수준으로 조정(삭감)

⇒ ‘지속가능성 계수’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할수록 연금액을 감액하는 자동조정장치임을 뜻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

▣ 호 주

○ ’92년, 퇴직연금제도(Superannuation Guarantee; SG) 도입

– 고령화 시대 대비, 기업 임의운영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강제화 조치 단행 → 사적 연금제도임에도 불구 SG 강제 가입의무 발생

* 상한소득 기준 적용(평균임금에 연동) 중이며,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약 2.5배

○ ’07년, 해당 제도의 대대적 개혁 단행

– ▸보험료 납부 및 운용단계에서 세제 간소화, ▸급여단계에서 비과세 혜택 부여, ▸60세 이상 수급자 대상 일시금 또는 연금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’ 등

* 개혁 이후에도 ’09년, ’11년 및 ’13년 각각 연금제도 개혁 시행

○ 해당 제도 특징은 **민간 수탁법인의 운용·관리 하 퇴직연금 투자 결정 및 운용**된다는 점

– 수탁법인은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**공격적으로 투자**하거나 부동산·인프라·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20%대 수준

○ 아울러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관리감독 기관을 두고 있음(건전성감독청, 투자위원회, 국세청)

* (감독청) 수익률이 2년 연속 최하위인 수탁법인 시장퇴출 조치

〈 국가별 연금제도 주요내용 비교표 〉

	한 국	일 본	스웨덴	독 일	호 주
재정안정화 자동조정장치 도입여부 (도입시기)	×	○ (2004년)	○ (1998년)	○ (2004년)	×
연금재정 고갈시점	○	×			△
	2054년 (’24년 KDI)	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여건 마련			사적(퇴직)연금 강제화 바탕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확보
연금수급 개시연령	63세→65세 상향 예정	65세→75세 상향 예정	67세 (’20년 62세→ 현재 67세)	65세→67세 상향 예정	66세→67세 상향 예정
공적연금 보험료율	9%	18.3%	18.5%	18.6%	11%→’25년 7월 이후 12%

* 자료 : The 2021 Ageing Report, OECD ‘Pensions at a Glance 2023’ 및 언론 종합

Ⅲ. 시사점

▣ 해외 연금개혁 사례 주요 포인트는 '**연금재정 안정성 확보**'인 바 **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검토** 필요

○ 연금개혁 성공국조차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 및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연금제도 손질 및 정비 추진* 중

* 재정 안정성 장치 재조정,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또는 연금 납부기간 연장 등

○ 현 공론화 단계의 연금개혁 내용*은 연금재정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닌바 향후 사회·경제 구조 변화 시 연금재정 고갈 우려 재발 가능성 높음

* [1안]보험료율 인상(9→13%) 및 소득대체율 상향(40→50%), [2안]보험료율만 인상(9→12%)

○ 이에 점진적으로 ❶연금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❷보험료율 인상 효과와 같은 연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야 함